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출년월일	2005. 8. 19.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

의안번호	제46호
------	------

제출일자 : 2005. 8.19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국가지원사업(농림부)으로 농업기반공사 사천지사장이 시행하는 정동면 가곡지구 저수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기존 자연취락마을이 수몰되게 계획됨에 따라 기존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취락지 조성이 시급함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토록 경남도에 결정 신청코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2. 계획의 내용

- 가. 건 명 :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신청(안)
- 나. 위 치 : 사천읍 용당리 43-2번지일원
- 다. 면 적(취락지구 지정 신청) : 12,780m²
- 라. 사업시행자 : 농업기반공사 사천지사

3. 법적근거

-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4. 의견청취 안건 : 별첨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22	용 당 자연취락 지구	자연 취락 지구	사천읍 용당리 43-2번지 일원	건폐율60% 용적율80%	12,780	-	

나.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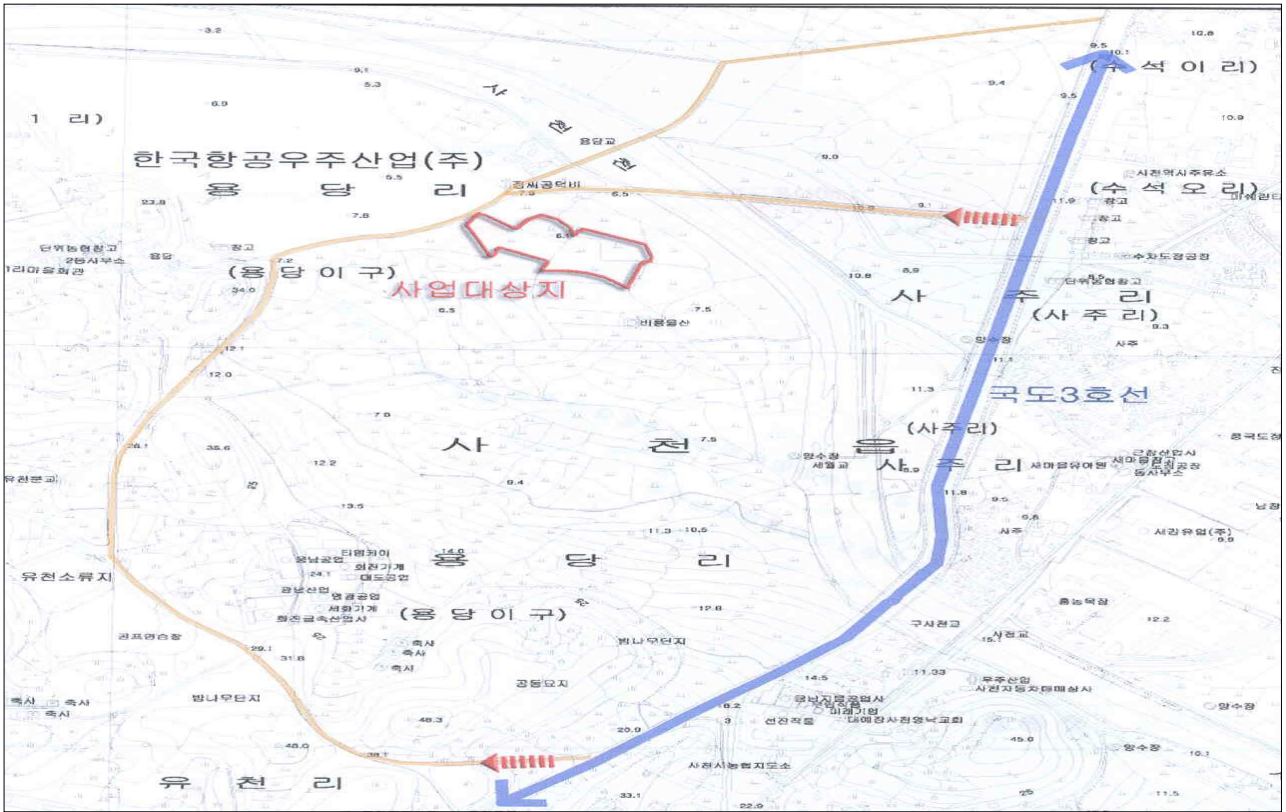
도 면 표시번호	지 구 명	결 정 내 용	변 경 사 유
22	용 당 자연취락지구	신 설 (12,780m ²)	·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조성 공사로 인해 수몰되어지는 기존 주민들의 조속한 이주택지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자연취 락지구를 지정코자 함.

□ 실과별 협의내용

실과소	협 의 내 용	비 고
문화관광과	<p>○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 보호법 제43조(발견신고) 및 제44조(발굴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p>	
환경보호과	<p>○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공사) 시행 전까지 신고를 득하여야 함.</p> <p>○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 할 경우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p> <p>-하수처리외 지역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오수,우수 합류식 하수처리 지역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할 경우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함. 하수 처리지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하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람.</p> <p>○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사업의 승인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협의 하여야 함.</p>	
도로교통과	<p>○도로법(도로시행, 도로점용허가등)저촉여부</p> <p>-우리부서에서 발주하여 현재 시행중인 한국항공 앞 굴곡도로 정비공사 일부구간이 접하고 있으므로 향후 실시설계시 시행중인 공사의 설계도서와 부합토록 협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도로점용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련 도로법에 의거 협의토록 하여야 함.</p>	
수도과	<p>○사천시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결과 상수도 공급가능여부는 원인자 부담으로 상수도 공급 가능.</p>	

실과소	협 의 내 용	비 고
농 정 과	○ '05.8.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농림부) 완료.	
하수도사업소	○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43-2번지 일원은 공공하수처리외 구역으로서 개별법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람..(오수처리시설 설치요망).	
공군제3훈련비행단장	<p>○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사항 : 군사시설보호구역외 지역으로 해당 없음</p> <p>○ 군용항공기지구역 관련사항 : 비행안전 5구역에 해당하며 본 건은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승인 신청으로 추후 건축협의를 별도로 요구됨</p> <p>○ 민원측면 : 신청지구는 부대 인근에 소재하여 항공기 소음이 심할 것이 예상되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주민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생활불편 및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설명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책임질 경우 지구지정이 가능함</p>	

□ 위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